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가단5279092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2023. 8. 16.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 (잔여 지급금의 지급일정)

1. (1차 지급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8. 7. 31.까지 합의금 잔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잔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 31.까지 합의금의 잔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나. 위 합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위 합의서에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1) 원고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과 각 변제기 다음날인,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는 변제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강요하며 약속하여 이를 믿고 보증의 의사 없이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보증 행위는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1)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합의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은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 책임이 된다.